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70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 42건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9조 → 제4조 등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16. 11. 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 「지방회계법」 제18조 등

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631건¹⁾의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정비²⁾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음.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조례 631건, 규칙 229건, 훈령 29건, 예규 10건이 게재되어 있음(2019. 6. 10. 기준).

2) 일괄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임.

- 2003년 이후 모두 21회에 걸쳐 일괄정비 형식의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 정비 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이 중 16건의 일괄 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 번	발의 일시	조 례 명	제안자	처리결과
1	2003. 2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2	2004.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3	2007. 1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4	2008. 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산기술 활용추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5	2008. 6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원	폐기
6	2009.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추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7	2009. 10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8	2010.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9	2011.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10	2014.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폐기
11	2015. 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2	2015.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세계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시장	폐기
13	2015. 1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가결
14	2016.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5	2017. 1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6	2018.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시장	가결
17	2018. 1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의 개정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수정가결
18	2018. 10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근로→노동)	의원	수정가결
19	2019. 1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수정가결
20	2019. 1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수정가결
21	2019.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수정가결

-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가능케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실제적인 사항의 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비교적 사소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통합·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신속히 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 사항, 일부 오기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 42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있음(참고자료).
- 이러한 조례 일괄정비는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관계법령의 제·개정·폐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까지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안 제16조에서 약칭³⁾은 법률에서 목적규정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오는 용어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3)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15)

[참고자료]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

연번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16.6.21)
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주택법」 제9조 ⇒ 「주택법」 제4조	「주택법」 개정(16.12.2)
		제10조제3항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 별표5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15.6.30)
		제10조제6항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제4항제2호가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정(15.6.30)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9조의2 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오기 수정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주택법」 제29조 ⇒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개정(16.1.19)
		제2조제2호	법 제2조제15호 ⇒ 법 제2조제25호	「주택법」 개정(16.1.19)
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7항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제명변경 개정(93.3.1)
6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오기 수정
7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4조제7호	「주택법」 제21조 ⇒ 「주택법」 제35조	「주택법」 개정(16.1.19)
		제14조제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연번	조 례 명	조 항	개 정 내 용	개정이유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사목2)	
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 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냉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7.11.28) 공기조화기 냉매 삭제되고, 냉매의 관리기준이 신설됨
9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 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5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17.1.17)
		제3조제16 호	특별법 제2조제3호 ⇒ 특별법 제7조제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17.1.17)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제2항 제2호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오기 수정
		제51조	영 제80조제1항 ⇒ 영 제80조	오기 수정
		제54조제2항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1.8.4)
1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의2제1항	법 제7조제4항 ⇒ 법 제7조제6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7.1.17)
		제3조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6.1.19)
1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 술품관 진흥 조례	제6조제3항 제3호	법 제17조 ⇒ 법 제29조	오기 수정(박물관 등록취소)
13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8.11.27)

연번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1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제6호 ⇒ 영 제24조제1항제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8.12.31)
1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조문에서 “법”이라는 약칭 사용하고 있어 수정
16	서울특별시 소유·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주택법」 제44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5.8.11)
1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9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15.8.11)
18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하 조문에서 “법 시행령” 약칭 사용하고 있어 수정
		제12조제2항	법 시행규칙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규정없어 제명 전체 기술
19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오기 수정
20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약칭 규정없어 제명 전체 기술
21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법 시행령 제2조 ⇒ 법 시행령 제2조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9.2.19)
2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법 제4조제2항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16.5.29)
		제3조	법 제7조제3항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16.5.29)
23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58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4.1.28)
24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	법 제94조제4항제12호 ⇒ 법 제94조제3항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7.11.28)

연번	조 례 명	조 항	개 정 내 용	개정이유
25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15.1.28)
26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17.12.12)
27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94조제5항제5호 ⇒ 법 제94조제4항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7.11.28)
2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법	앞에서 약칭 사용함에 따라 수정
29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7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 (16.11.29)
3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15.1.28)
31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32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78조 ⇒ 「지방회계법」 제39조	「지방회계법」 제정 (16.5.29)
33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15.12.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오기 수정

연번	조 례 명	조 항	개 정 내 용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3.6.28)
		제13조제3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제명 변경(15.1.6)
		제14조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개정(13.6.7)
35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지방재정법」 제16조 ⇒ 「지방회계법」 제26조	「지방회계법」 제정(16.5.29)
36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 변경(13.5.22)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50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 변경되면서 이동(13.5.22)
37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제3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개정(15.12.29)
38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근로자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명 변경(10.6.8)
39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오기 수정
40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수도법」 ⇒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이하에서 약칭 사용에 따라 반영
			「수도법시행령」 ⇒ 「수도법 시행령」	오기 수정
41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	제2조제2호	「소방기본법」 제13조제1항	「소방기본법」

연번	조 례 명	조 항	개 정 내 용	개정이유
	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방기본법」 제13조제1항	개정(16.1.27)
4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제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15.12.22)